

법령단위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p> <p>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p> <p>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p> <p>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p> <p>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p> <p>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p> <p>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p> <p>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라 한다)</p> <p>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p> <p>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 1. 17.]</p>	<p>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 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 라. 시도
 - 마. 군도
 -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p>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p>		
--	--	--

	<p>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2조 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9. 3. 19.></p> <p>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9. 3. 19.></p> <p>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신설 2020. 9. 10.> [전문개정 2012. 8. 22.]</p>	
	<p>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4.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시행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p>[본조신설 2007. 4. 20.]</p>	

<p>제5조(추진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 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 출된 추진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2. 1. 17.]</p>	<p>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 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 안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 한 사항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수단 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 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4. 20.]</p>	
<p>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집행 실적 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 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을 검토하 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하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p>	<p>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 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 는 변경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 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 는 경우 3. 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 우 4.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기간 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07. 4. 20.> [전문개정 2000. 4. 12.] [제목개정 2007. 4. 20.]</p>	

<p>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⑤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17.]</p>	<p>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삼제 <2012. 8. 22.> <p>[제목개정 2007. 4. 20.]</p>	
---	---	--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4. 1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0. 6. 9.>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10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p>제7조의3 삭제</p> <p>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관리청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광역도로를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에 광역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에 위하여 그 광역도로 전체의 구조 및 시설물 등을 일치시키거나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기본설계(공사의 개요,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공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세부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설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립한 경우에는 그 광역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설계에 따라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세부설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설계를 수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설계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을 그 광역도로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p>		
<p>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17.]</p>		

<p>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4. 7.]</p>		
<p>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4. 7.]</p>		

<p>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계획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4. 7.]</p>		
<p>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자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예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 2.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거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교통축 또는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⑦ 그 밖에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2. 6. 10.]</p>		
--	--	--

제7조의11(환승편의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철도 또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개요 공고(이하 "제안내용 공고"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안내용 공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반영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수립할 때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계획을 승인하려면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p>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변경되어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2. 11. 15.]</p>		
<p>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p> <p>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p> <p>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7., 2020. 6. 9., 2022. 6. 10., 2022. 11. 15.></p> <p>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p> <p>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p> <p>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p> <p>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p> <p>4의2. 제7조의10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변경·해제 및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p> <p>4의3. 제7조의11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p> <p>5.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p> <p>5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 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p> <p>5의3.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p> <p>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p> <p>가.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p> <p>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 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p> <p>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p> <p>7.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7.></p> <p>[전문개정 2018. 12. 18.]</p>	<p>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p>	
	<p>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 안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 (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 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 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 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 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7조의2제 1항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 4. 27., 2023. 10. 18.>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4. 27.> 1.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 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4. 20.]</p>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3. 8., 2006. 3. 29., 2007. 4. 20., 2009. 7. 30., 2012. 4. 27., 2014. 12. 30., 2020. 6. 16., 2023. 10. 18.>

1. 삭제 <2023. 10. 18.>
2. 삭제 <2023. 10. 18.>
3. 삭제 <2023. 10. 18.>
4. 삭제 <2001. 4. 30.>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 삭제 <2008. 11. 11.>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중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 삭제 <2008. 11. 11.>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3. 삭제 <2008. 11. 11.>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 4. 30., 2007. 4. 20.>

③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4. 30., 2012. 8. 22.>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 환승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4. 30.>

⑤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

	<p>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30., 2007. 4. 20.></p> <p>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1. 4. 30.></p> <p>⑦ 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1. 4. 30., 2006. 3. 29., 2008. 2. 29., 2013. 3. 23.></p>	
<p>제9조의2(위원장) ①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차수가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령등에 따른 예산 요구·집행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한 예산요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8.]</p>	<p>제9조의2 삭제</p>	
<p>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8.]</p>	<p>제9조의3(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 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p>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총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시·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칭·위치
2. 지정 목적
3. 인구, 주택 수 등의 현황
4.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그 이행 현황
5. 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개요
6.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명칭·위치
2. 지정 목적
3. 열람 기간 및 방법
4.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공고를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 만료시점

	<p>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p> <p>⑥ 법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p>⑦ 법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일 3.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20. 9. 10.]</p>	
<p>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의결한다.</p> <p>⑤ 그 밖에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8.]</p>	<p>제9조의5(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광역교통 현황 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2. 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3. 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 <p>②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 3. 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20. 9. 10.]</p>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 받은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6(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7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대책에 따라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등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 계획
2. 특별대책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8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대책을 통보받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특별대책의 자원규모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10.]

<p>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p> <p>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③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8.]</p>	<p>제9조의7(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 또는 도시철도·철도를 통해 대도시권에서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축일 것</p> <p>2.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철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p> <p>나.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p> <p>② 법 제7조의10제5항에서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법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 사업이 완료된 경우</p> <p>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해당 광역교통축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을 지정·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2. 12. 6.]</p>	
--	--	--

<p>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교통정책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의8(광역교통특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광역교통특별 교통혼잡 문제 현황 및 전망2. 광역교통특별교통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3. 광역교통특별교통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부담에 관한 사항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 중 광역교통특별 교통혼잡 해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특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7조의10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광역교통특별교통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광역교통특별교통대책 사업별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3. 광역교통특별교통대책에 따른 사업별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특별교통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2. 12. 6.]</p>	
--	--	--

제9조의9(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9(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공고하는 사업일 것
 2. 대도시권의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일 것
 3.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기 위한 사업일 것
 4. 환승역의 신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일 것
 ② 법 제7조의11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환승편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의11제8항에서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별 환승역의 노선별 승강장 간 환승동선의 평균환승거리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2. 환승역이 추가로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3.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삭제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조의11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5. 9.]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의 광역철도 구간에 실제 들어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분담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⑥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⑩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대통령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3. 19.]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12. 1. 17.]</p>		
<p>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분담률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그 부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p>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2. 8., 2020. 6. 9.>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을 부칙 제9조에 따라 중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8. 6., 2016. 12. 27., 2020. 6. 9.>

[전문개정 2012. 1. 17.]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5. 8. 28.>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시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7. 2. 8., 2023. 8. 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 삭제<2013. 8. 6.>
[전문개정 2012. 1. 17.]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법 제9조의 5제1항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도시계획·재정·행정·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할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⑤ 제4항제3호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p>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8. 6.></p> <p>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p> <p>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p> <p>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p> <p>②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8. 6.></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 지역의 위치·규모·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8. 6.></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개정 2013. 8. 6, 2015. 8. 28.></p> <p>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1. 17.]</p>	<p>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p> <p>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대전권에 한정한다)</p> <p>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해당 대도시권의 위원</p> <p>3.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p> <p>[본조신설 2019. 3. 19.]</p>	
---	---	--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3. 8. 6.>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2. 11. 15.>

⑥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11. 15.>

⑦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22. 11. 15.>

⑧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2022. 11. 15.>

⑨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추징·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22. 11. 15.>

제11조의4(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①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3. 19.]

<p>[전문개정 2012. 1. 17.]</p> <p>제11조의5(이의신청) ①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8. 6.></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1. 17.]</p>	<p>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개정 2014. 1. 7., 2018. 3. 20., 2023. 6. 9.></p> <p>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p> <p>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20. 6. 9., 2020.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 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p>[전문개정 2012. 1. 17.]</p>		

<p>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을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3. 8. 6.></p> <p>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8.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사업비 3.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1. 17.]</p>		
<p>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을 향상을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결과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특별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2. 6. 10.]</p>	<p>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p>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p> <p>[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5. 7. 24.]</p>	<p>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사업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구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8.]</p>	
<p>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1.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p> <p>2.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p> <p>[본조신설 2022. 6. 10.]</p>	<p>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4조의2(환승센터 등의 건설·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라 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로 한다.</p> <p>②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또는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에서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4. 20.]</p>	
	<p>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p> <p>②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운송사업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22. 12. 6.]</p>	

	<p>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30., 2012. 4. 27., 2014. 2.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예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 학교용지 <p>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개정 2006. 3. 29., 2011. 1. 17., 2012. 8. 22., 2016.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1. 1. 17.> 2. 삭제 <2011. 1. 17.> <p>③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신설 2006. 3. 29., 2010. 11. 15., 2012. 8. 22., 2014. 2. 5.></p> <p>④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2. 8. 22., 2014. 2. 5., 2015. 12.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 	
--	---	--

	<p>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p> <p>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p> <p>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p> <p>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p> <p>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p> <p>라.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p> <p>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p> <p>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p> <p>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p> <p>다. 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p> <p>라.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p> <p>⑤ 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29., 2012. 8. 22.></p> <p>⑥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03. 6. 30., 2003. 11. 29., 2004. 1. 20.,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0. 6. 10., 2012. 8. 22., 2014. 2. 5., 2016. 8. 11., 2018. 2. 9., 2020. 3. 24., 2022. 2. 8.></p> <p>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p> <p>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p> <p>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p> <p>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p> <p>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p> <p>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p> <p>7.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p>	
--	--	--

	<p>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총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신설 2022. 2. 8.></p> <p>⑧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3. 29., 2014. 2.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p>[본조신설 2001. 4. 30.]</p>	
--	---	--

	<p>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2014. 2. 5.></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 2. 5.></p> <p>⑦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2.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p>⑧ 법 제11조의4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신설 2023. 5. 9.></p> <p>⑨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신설 2014. 2. 5., 2023. 5.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 착 	
--	--	--

	<p>오 등 납부일</p> <p>2. 부담금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취소일</p> <p>3. 부담금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의 처분일</p> <p>⑩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2. 5., 2023. 5. 9.></p> <p>⑪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2. 5., 2023. 5. 9.> [전문개정 2001. 4. 30.]</p>	
	<p>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 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 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p>	
	<p>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3. 19.></p> <p>③ 시·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9. 3. 19.> [본조신설 2001. 4. 30.]</p>	

	<p>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p> <p>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p> <p>.<개정 2023. 11. 16.> [본조신설 2001. 4. 30.]</p>	
	<p>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p> <p>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p> <p>나. 2층 전기버스 도입</p> <p>다. 운행정보시스템, 좌석사전예약시스템 구축·운영 등 광역버스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p> <p>2.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p> <p>가.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p> <p>나. 운전자 휴게소</p> <p>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p> <p>라.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p> <p>[본조신설 2020. 9. 10.]</p>	

	<p>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2.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편의성3. 교통수단의 이동성4.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성5.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혼잡성6.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③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기준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평가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2. 12. 6.] [중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12. 6.>]</p>	
	<p>제19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제7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수립·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3.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4.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제출된 특별대책 검토 <p>[본조신설 2020. 9. 10.] [제18조에서 이동, 중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12. 6.>]</p>	
	<p>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